

2021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I.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0 원
- 징수결정액 : 12,464천원
- 실제수납액 : 12,464천원
- 결손처분액 : 0 원
- 미 수 납 액 : 0 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100.0%(전년도 47.6%)임.

〈2021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B)	수 납 액 (C)	결손처분액(D)		미수납액 (E)= (A)-(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
				불납	시효			
합 계	-	12,464	12,464	-	-	-	-	100.0
세외수입	-	12,464	12,464	-	-	-	-	100.0
임시적세외수입	-	12,464	12,464	-	-	-	-	100.0
기타수입	-	10,104	10,104	-	-	-	-	100.0
그외수입	-	10,104	10,104	-	-	-	-	100.0
지난년도수입	-	2,360	2,360	-	-	-	-	100.0
지난년도수입	-	2,360	2,360	-	-	-	-	100.0

※ 결손처분액 = 불납결손액 + 시효결손액,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2. 세출결산

- 당초예산 : 1,248,207천원
- 예산증감 : - 15,000천원
- 예산현액 : 1,233,207천원
- 지출액 : 1,007,365천원
- 이월액 : 0 원
- 불용액 : 225,842천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8.3%(전년도 23.9%)가 발생
- 불용사유별 금액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8.3%(전년도 23.9%)가 발생
- 불용사유별 금액으로는 낙찰차액 6,828천원, 예산집행잔액 219,014천원임.

〈 2021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
총 예 산	1,233,207	1,007,365	-	225,842	18.3
사 업 예 산 계	1,087,945	890,731	-	197,214	18.1
민생사법경찰 활동 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1,087,945	890,731	-	197,214	18.1
민생사법경찰 업무 활성화	1,087,945	890,731	-	197,214	18.1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	27,285	18,227	-	9,058	33.2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896,877	717,492	-	179,385	20.0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163,783	155,012	-	8,771	5.4
일 반 예 산 계	145,262	116,634	-	28,628	19.7
기 본 경 비	145,262	116,634	-	28,628	19.7

- 가.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 나. 예산 전용 : 해당 없음.
- 다. 예산 이체 : 해당 없음.
- 라. 예산의 변경사용 : 해당 없음.
- 마. 예비비 사용 : 해당 없음.
-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 없음.
- 사. 국고보조금 집행 : 해당 없음.

3. 기금결산 : 해당 없음.

4. 채권현재액 : 해당 없음.

5. 채무결산 : 해당 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해당 없음.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2021년도말 민생사범경찰단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 신규취득, 관리전환 등 증액 4,404천원
- 매각, 관리전환 등 감액 27,186천원 등
- 당해연도말 총 수량 147개, 현재액은 90,471천원임.

〈 2021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천원)

연번	정부 물품 분류 번호	품명	단 위	정 수	내 용 연 수	구 분	2020 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물품 증감현황								2021 년도말 보유액		
								취득				처분						
								구 매	관 리 전 환	양 여 기 타	소 계	매 각	관 리 전 환	양 여 기 타	소 계			
합계				146		수량	140	3	4	-	-	7	-	1	-	-	1	147
합계				146		금액	86,067	1,000	3,404	-	-	4,404	-	27,186	-	-	27,186	90,471
1	2510 1611	화물트럭	대	-	8	수량	1	-	-	-	-	-	-	1	-	-	1	-
						금액	27,186	-	-	-	-	-	-	27,186	-	-	27,186	-
2	4010 1787	방난방기	개	13	9	수량	13	-	-	-	-	-	-	-	-	-	-	13
						금액	7,721	-	-	-	-	-	-	-	-	-	-	7,721
3	4321 1503	노트북 컴퓨터	대	13	6	수량	9	-	4	-	-	4	-	-	-	-	-	13
						금액	12,855	-	3,404	-	-	3,404	-	-	-	-	-	16,259
4	4511 1616	비디오 프로젝터	대	1	8	수량	1	-	-	-	-	-	-	-	-	-	-	1
						금액	1,415	-	-	-	-	-	-	-	-	-	-	1,415
5	4512 1516	디지털 캠코더 또는 비디오 카메라	개	119	9	수량	117	3	-	-	-	3	-	-	-	-	-	120
						금액	64,076	1,000	-	-	-	1,000	-	-	-	-	-	65,076

II. 검토의견

1. 세입결산

- 2021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세입은 당초 편성한 예산은 없으나 직원 전출입 등에 따른 수당 조정 또는 수당 과오지급 등의 반납에 따른 ‘그외수입’ 1천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236만원을 수납하여 10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음.

〈2021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B)	수 납 액 (C)	결손처분액(D)		미수납액 (E)= (A)-(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
				불납	시효			
합 계	-	12,464	12,464	-	-	-	-	100.0
세외수입	-	12,464	12,464	-	-	-	-	100.0
임시적세외수입	-	12,464	12,464	-	-	-	-	100.0
기타수입	-	10,104	10,104	-	-	-	-	100.0
그외수입	-	10,104	10,104	-	-	-	-	100.0
지난년도수입	-	2,360	2,360	-	-	-	-	100.0
지난년도수입	-	2,360	2,360	-	-	-	-	100.0

- 「202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는 ‘지난연도 수입’ 등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 없이 세입예산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에도,1)

1) 서울특별시, 「202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2020. 8., 33면(1. 세입예산 편성방향) 참조.

○ 각 부서별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 없이 세입예산 편성 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비반환금 수입, 공금통장 이자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 민생사법경찰단은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나 '지난연도 수입' 과목을 2021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는바, 민생사법경찰단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미수납액 발생시 '지난연도 수입'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미수납액 관리와 지속적인 징수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연가 및 가족수당 반납(223만원)은 2020회계연도 예산지급분으로 다음 연도인 2021년 세외수입으로 처리한 것이고, 출장여비 및 가산금 반납은 2021년 1월부터 9월 기간 중 출장여비 부정 수령금액 환수 및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징수금 등(788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임.²⁾

〈 최근 3년간 민생사법경찰단의 그외수입 세부내역 〉

(단위 : 원)

연 도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과부족액	상세사유
2021	224-06 그외수입	0	10,104,180	10,104,180	0	직원 전출입 등에 따른 수당 조정 또는 수당 과오지급, 수령시 발생
2020	224-06 그외수입	0	950,420	950,420	0	직원 전출입 등에 따른 수당 조정 또는 수당 과오지급, 수령시 발생 연가보상비와 시전입에 따른 파견 직급보조비 반납
2019	224-06 그외수입	0	4,451,290	891,290	3,560,000	수당 반납분에 따른 직원 자금압박으로 체납. 20년도 38세금징수과 체납 이관 및 분납조정에 따른 일부 수납

2)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1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을 말한다.

2. 임시적 세외수입

- 가. 재산매각수입
- 라. 기타수입

- 나. 부담금
- 마. 지난연도수입

다. 과징금 등

〈 2021년 수당 반납 세부내역 〉

(단위 : 원)

예산과목	과세내역	건 수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총 계						
224-06 그외수입	2020년 연가보상비 정산 반납	5	533,540	533,540	-	
	전문관해제에 따른 전문관 수당 반납	1	1,640,000	1,640,000	-	
	2020년 8월 휴직에 따른 직급보조비 반납	1	10,640	10,640	-	
	가족사항 변경에 따른 가족수당 반납	1	40,000	40,000	-	
	출장여비 및 가산금 반납	16	7,880,000	7,880,000	-	
225-01 지난연도 수입	가족수당 반납	1	2,360,000	2,360,000	-	20년도 38세금징수와 체납 이관 및 분납조정에 따라 분할 수납 중이던 것으로 2021년도 완납

- 이 중 출장여비 및 가산금 반납(770만원)은 2021년 1월부터 9월 기간 중 259건의 출장에 대해 259만원의 출장여비 부정 수령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³⁾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가산 징수액 (518만원)을 포함한 총 777만원을 징수하라는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따른 것임.

※ 이는 감사위원회가 2021년 1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 수급 자체 감사 요청에 따라 본청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21년도 초과근무 및 출장여비 지급 상위 3개부서를 지정하여 초과근무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복무 감사를

3)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시행규칙」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실시한 결과, 출장여비 부정수급 감사대상기관인 민생사법경찰단 대해 전자결재 접속기록, 복무관리시스템(출장관리) 출장신청등록 자료, 출장결과보고서, 차량배차 일지, 소명서 청구자료 등을 점검하여 출장비 부정수령사항을 적출하였음(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감사 결과”, 2022. 2. 참조).

〈 민생사법경찰단 출장여비 부정 수령 내역 〉

(단위 : 천 원)

연번	성명	위반내용 및 횟수	환수액	가산 징수액 (2배)	총 액	신분상 조치
계		총 259회	2,590	5,180	7,770	
1	갑1	출장여비 관련 관용차이용시 1만원을 받아야 하나 2만원 지급받음 1건	10	20	30	-
2	갑2	출장여비 관련 관용차이용시 1만원을 받아야 하나 2만원 지급받음 5건	50	100	150	-
3	갑3	출장여비 관련 관용차이용시 1만원을 받아야 하나 2만원 지급받음 3건	30	60	90	-
4	갑4	출장여비 관련 관용차이용시 1만원을 받아야 하나 2만원 지급받음 15건	150	300	450	주의
5	갑5	출장여비 관련 관용차이용시 1만원을 받아야 하나 2만원 지급받음 7건	70	140	210	-
6	갑6	출장여비 관련 관용차이용시 1만원을 받아야 하나 2만원 지급받음 114건	1,140	2,280	3,420	혼계
7	갑7	출장여비 관련 관용차이용시 1만원을 받아야 하나 2만원 지급받음 11건 출장시간 4시간 이상시 2만원을 받아야 하나 4시간 미만(조기복귀)출장에 대해 2만원지급받음 2건	130	260	390	주의
8	갑8	출장여비 관련 관용차이용시 1만원을 받아야 하나 2만원 지급받음 48건	480	960	1,440	주의
9	갑9	출장여비 관련 관용차이용시 1만원을 받아야 하나 2만원 지급받음 53건	530	1060	1,590	주의

※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감사 결과”, 2022.2., 7면 표 재인용.

- 특히, 민생사법경찰단은 사법경찰로서 행정의 실효성 강화 및 법질서 확립 제고에 기여하는 부서로서 높은 법질서 의식이 요구되므로, 향후에는 허위로 출장명령 및 출장결과보고를 하는 일이 없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를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철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관리와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 및 여비의 반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세출결산

가. 사무관리비의 높은 불용률 등

- 2021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의 사업별 ‘사무관리비’ 총액은 4억 2천 9백만원(전년 6억3백만원 대비 29% 감액편성)의 예산을 편성하여 85.8%를 집행(6천1백만원, 불용률 14.2%)하였으며, 세부 내역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특별사법경찰 직무 역량 강화” 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책자인쇄(74.0%)’, ‘교육운영비(60.0%)’와 “특별사법 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수사업무 매뉴얼 제작 및 인쇄(35.8%)’, ‘압수물 폐기 운영(38.5%)’, ‘체력단련실 운영(83.3%)’, “특별사법경찰 수사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제안서 평가위원수당(25.0%)’,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중 ‘소규모수선비(26.5%)’, ‘행정장비 수리비(44.5%)’, ‘인쇄비 및 유인물 제작비(35.0%)’ 등은 불용률이 20%를 초과하고 있음.
- ‘사무관리비’의 불용사유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불용으로 기본직무 교육 취소, 체력단련실 폐쇄, 재택근무 등에 따른 집행 감소 등은 코로나19 확산과 집합금지 확대 등으로 집행 불가능이 예견되었음에도 집행이 어려운 ‘사무관리비’에 대한 감추경을 시행하지 않음에 따라 ‘사무관리비’ 6천 1백만원(불용률 14.2%)을 불용시켰음.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등 비효율적 예산편성을 지양하라는 기본방향에도 어긋나는바,⁴⁾

4) 행정안전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020.7., 9면 참조.

- 민생사법경찰단은 향후에는 실소요 예산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효율적 집행을 위한 노력은 물론, 당초 예산 설계와 달리 예산 불용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추경 등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1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의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	통계목	2021년도					2022년도
		세부내역	편성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편성액
계			428,605	367,669	60,936	14.2%	402,746
특별사법 경찰 직무 역량 강화	사	계	18,285	9,238	9,047	49.5%	9,648
		강사료	6,525	5,400	1,125	17.2%	6,480
		원고료	360	360	0	0%	300
		책자인쇄(교재)	7,500	1,949	5,551	74.0%	1,068
		교육운영비	3,900	1,529	2,371	60.8%	1,800
특별사법 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무	계	287,478	262,801	24,677	8.6%	268,740
		기획단속 등 매식비	19,680	19,140	540	2.7%	16,800
		차량 임차료	143,400	130,152	13,248	9.2%	131,100
		피복비(근무복 3종)	36,190	34,075	2,115	5.8%	39,160
		홍보비	15,000	14,897	103	0.7%	15,000
		수사활동 경비	28,800	26,212	2,588	9.0%	28,800
	관 리	수사업무 매뉴얼 제작 및 인쇄	1,000	642	358	35.8%	-
		압수물 폐기 운영	3,000	1,844	1,156	38.5%	1,000
		수사팀 운영	35,808	33,029	2,779	7.8%	20,380
		체력단련실 운영	2,100	350	1,750	83.3%	1,500
		정책자문단 운영	2,500	2,460	40	1.6%	5,000
		계	1,600	1,200	400	25.0%	1,600
		제안서평가위원수당	1,600	1,200	400	25.0%	1,600
특별사법 경찰 수사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본경비	비	계	121,242	94,430	26,812	22.1%	122,758
		기본사무용종이류	1,408	1,400	8	0.6%	1,429
		소규모수선비	340	250	90	26.5%	345
		행정장비 수리비	1,764	981	783	44.5%	1,764
		도서구입비	450	368	82	18.2%	500
		주요업무추진 급량비	97,920	78,809	19,111	19.5%	99,360
		인쇄비 및 유인물 제작비	19,360	12,622	6,738	35.0%	19,360

○ 또한, 최근 3년간 민생사법경찰단의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0회계연도 불용률 18.3%에 이어, 2021회계연도에도 ‘사무관리비’를 전년도 대비 29% 감액편성(전년 6억3백만원) 하였음에도, ‘사무관리비’의 불용률이 14.2%에 달하고 있는바, ‘사무관리비’의 과다 편성 및 불성실한 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민생사법경찰단의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

2019회계연도			2020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617,291	522,685	104,606 (16.7%)	603,124	492,613	110,511 (18.3%)	428,605	367,669	60,936 (14.2%)

나. 불용예산 발생의 문제

○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12억 3천 3백만원 중 10억 7백만원을 집행하여 불용률은 18.3%(2억2천6백만원)로 전년(23.9%) 대비 5.6% 감소하였으나,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1.6%)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바, 사업관리와 예산집행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2021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총 예 산	1,233,207	1,007,365	-	225,842	18.3
사 업 예 산 계	1,087,945	890,731	-	197,214	18.1
민생사법경찰 활동 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1,087,945	890,731	-	197,214	18.1
민생사법경찰 업무 활성화	1,087,945	890,731	-	197,214	18.1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	27,285	18,227	-	9,058	33.2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896,877	717,492	-	179,385	20.0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163,783	155,012	-	8,771	5.4
일 반 예 산 계	145,262	116,634	-	28,628	19.7
기 본 경 비	145,262	116,634	-	28,628	19.7

-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 사업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으로 공무국외 출장 제한에 따라 ‘국외업무여비’ 1천 5백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예산현액 2천 7백만원 중 1천 8백만원을 집행하고, 33.1%의 불용률(불용액 9백만원)을 보이고 있음.

〈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 사업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	27,285	18,227	9,058	33.1%
사 무 관 리 비	18,285	9,238	9,047	49.5%
국 외 업 무 여 비	-	-	-	-
시 책 추 진 업 무 추 진 비	9,000	8,989	11	0.1%

※ 불용사유

- ▶ 사무관리비 : 코로나19로 인한 기본직무교육(집합교육)취소로 강사료, 책자인쇄비 및 교육운영비 집행감소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로 대면 교육인 기본직무교육(집합교육) 취소로 인한 ‘사무관리비’ 불용인바, 민생사법경찰단 행정지식과 더불어 전문성은 물론 수사에 관한 특별한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수사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1년 민생사법경찰단 직무교육 실적 〉

연번	교육과정	교육대상(명)	이수자(명)	비율(%)
1	2021년 전입직원 수사실무 교육(1.20.~1.22.)	22	17	77%
2	2021년 자체 팀장 직무교육(6.3.)	13	13	100%
3	2021년 자체 경력직원 직무교육(6.10/6.17/6.24)	14	11	79%
4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관 교육(7.1.)	6	14	233%
5	2021년 수사실무 전입직원 직무교육(11.23.~11.24.)	11	11	100%
6	2021년 수사실무 경력직원 직무교육(11.25.)	19	19	100%
7	2021년 직무 특화교육(12.8.)	5	8	160%
8	수사관 역량강화 특화교육(12.15.)	24	16	67%
9	수사관련 직무 특화교육(12.17.)	7	8	114%
합 계		121	117	97%

- “기본경비”는 정책사업 수행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으며, 부서의 인원 수에 비례하여 산출하는 운영경비로서 예산현액(1억2천1백만원) 대비 불용률이 19.7%(불용액 2천 9백만원)로, 민생사법경찰단 인원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확대로 인한 특근매식비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하고 있음.

- 민생사법경찰단의 “기본경비” 불용률은 “지속적인 불용 처리되는 예산에 대해 감액조정 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는 의회의 지적에 따라 2020회계연도(30.5%, 불용액 4천2백만원)보다는 감소하였으나 2021회계연도(19.7%, 불용액 2천9백만원)에도 반복되고 있는바,
- 민생사법경찰단은 적정한 인력 운영계획 및 그에 맞는 예산편성 노력이 요구되며,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감추경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기본경비”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기본경비	145,262	116,634	28,628	19.7%
사무관리비	121,242	94,430	26,812	22.1%
국내여비	9,520	7,749	1,771	18.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500	5,463	37	0.7%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000	8,992	9	0.1%

※ 불용사유

- ▶ 사무관리비 : 인원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확대로 특근매식비, 인쇄비 및 유인물 제작비 등 기본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임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최문숙
--------	-----	-------	-----